

의안번호	제 200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7월 일 (제 341 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6월 23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200
-------------	-----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23일
발의자 : 김영주, 임희무, 엄재창
윤은희, 연철흠, 최광옥
이숙애

1. 개정이유

- 「문화재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수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였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능동적인 문화재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화재예방을 위하여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서 “역사문화환경” 신설 (안 제2조)
- 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기능 중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삭제 (안 제4조)
- 다. 충청북도 문화재분과위원회 구성을 기준 3개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 (안 제11조)

라. 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안 제19조의 2)

마. 문구 및 자구 수정

※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특정인의 재산상의 →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자유의 침해 → 자유에 대한 침해,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4조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2
-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15. 6. 8 ~ 2015. 6. 18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란”을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역사문화환경: 도지정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

제4조 제4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8호의 “환경보전”을 “역사문화환경보전”으로 하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을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을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의 “제1분과 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특정인의 재산상의”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로, “자유의 침해”를 “자유에 대한 침해”로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2. 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를 따른다.

제36조 제3호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37조 중 제1항 “제35조제1항 · 제3항”을 “제35조”로, 제2항

“34조제1항”을 “제35조”로 한다.

제45조 중 제1항의 “이하 같다)의”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로, 제1항 제4호의 “제35조제1항”을 “제35조”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제2항, 제3항으로 각각 변경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검토

제63조 제2호 “소유자 등에”를 “소유자, 행위자 등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 (생략)	6. (현행과 같음)
8.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 역사문화환경보전----- ----- -----
9.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9. (삭제)
10. (생략)	8. (현행과 같음)
11. (생략)	9. (현행과 같음)
12.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 -----.
1. ——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8조(전문위원) ①, ②(생략)	제5조(구성) ①, ②(현행과 같음)
1. ——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제1분과위원회</u> , <u>제2분과위원회</u> , <u>제3분과위원회</u> 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 ----- ----- ----- <u>분과위원회</u> -----.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회의록 작성)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u>특정인의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12조(회의록 작성) ② -----</p> <p>-----. ----- <u>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신설)	<p>제19조의 2(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2. 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p>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제34조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29조를 따른다.	제34조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를 따른다.
제36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1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제36조(허가기준)-----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제18조 ----- -----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35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 -- 제35조, ----- ----- ----- ----- ----- . 1.~ 3. (현행과 같음) ② 제35조 ----- ----- ----- ----- .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u>이하 같다)</u> 의 관리·보호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행정명령) ① ----- ----- ----- -----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 ----- -----.
1. ~ 3. (생략) 4. 제35조제1항 ----- -----. <u>③</u> (생략) <u>④</u> (생략) 제49조(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의 보호) <u>③</u> (생략) 1. ~ 7.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5조</u> ----- ----- (현행과 같음). <u>②</u> (현행과 같음) <u>③</u> (현행과 같음) 제49조(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의 보호) <u>③</u>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토
제63조 (권한의 위임) (생략) 1. (생략) 2. 제45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u>소유자 등에</u>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 3. (생략)	제63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소유자, 행위자 등에</u> ---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앞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대상문화재	종 류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재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재의 특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1.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경과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도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도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있음, [] 없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뒷쪽)

문화재입지 현황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 성 방 식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식물 등), 문화재 이전 여부, 향후 복원 가능성 등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재에 포함된 점(點)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 신청지와 문화재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관련법령 발췌

□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

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

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 26>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 29> [본조신설 2012. 6. 21]